

2018 안태영 만점수사 기출문제 수정 및 추가사항

※교재 15쪽 12번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목적·내용에 관한 실제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법성이 요구된다.

※교재 62쪽에 추가합니다.

19-2.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경찰수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수사직무(수사지휘 제외)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제척의 사유가 되지만,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제척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모든 내사·수사사건에 적용이 원칙이나, 기피제도의 경우 고소·고발·탄원·신고사건, 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적용된다.

- | | | | |
|--------|------|------|------|
| ① ㉠(○) | ㉡(X) | ㉢(○) | ㉣(X) |
| ② ㉠(X) | ㉡(X) | ㉢(X) | ㉣(○) |
| ③ ㉠(X) | ㉡(○) | ㉢(X) | ㉣(○) |
| ④ ㉠(X) | ㉡(X) | ㉢(X) | ㉣(X) |

해설 ㉠㉡㉢ 지문이다.

- ㉠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 포함)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 포함된다.

정답 ②

19-3.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경찰수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기피 사유가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은 염려가 있다고

-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때 경찰관은 소속 부서장에게 별도 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수사 기일 임박, 증거인멸 방지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부서 장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찰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대상 사건이 송치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변호인이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 신청한 경우는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
 - ㉢ 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와는 별도로 기존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는 그대로 존치한다.
 - ㉣ 기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① ㉠(O) | ㉡(X) | ㉢(X) | ㉣(X) | ㉤(O) |
| ② ㉠(X) | ㉡(X) | ㉢(O) | ㉣(X) | ㉤(X) |
| ③ ㉠(O) | ㉡(O) | ㉢(X) | ㉣(O) | ㉤(O) |
| ④ ㉠(O) | ㉡(O) | ㉢(O) | ㉣(X) | ㉤(X) |

해설 ㉠ 시행하였던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는 폐기되었다.
 ㉡ 기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8조의3 제1항).
정답 ④

19-4.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경찰수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후견감독인인 경우에도 제척의 이유가 된다.
- ㉡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 기피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사건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고 이를 감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찰부서의 장은 기피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한다.
-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 | | | | | |
|--------|------|------|------|------|
| ① ㉠(O) | ㉡(X) | ㉢(X) | ㉣(X) | ㉤(O) |
| ② ㉠(X) | ㉡(X) | ㉢(O) | ㉣(O) | ㉤(X) |
| ③ ㉠(O) | ㉡(O) | ㉢(X) | ㉣(O) | ㉤(O) |
| ④ ㉠(O) | ㉡(O) | ㉢(O) | ㉣(O) | ㉤(X) |

해설 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이 있었던 경우 각하한다.
정답 ④

19-5. 경찰수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 시행계획 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㉑ ()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기획·인지 사건은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수사로 인한 수사대상자의 지위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경찰의 권한남용 여지 차단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 ㉒ 수사부서장은 내사에 착수한 후 ()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내사편철 지휘를 하여야 한다. 단, 계속 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내사할 수 있다.
- ㉓ 수사부서장은 범죄인지 후 ()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 단,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상급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
- ㉔ 계속 수사·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장(내사), 관서장(수사)에게 진행상황 보고 및 분석회의를 실시한다. 이 때 수사부서장(내사), 관서장(수사)은 보고내용과 분석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 ① 5 ② 6 ③ 9 ④ 10

해설 ㉑ 2 ㉒ 6 ㉓ 1
정답 ③

※교재 82쪽 15번문제 지문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③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정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정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교재 138쪽에 추가합니다.

34-2.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 ②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 ③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 ④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드카

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을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설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정답 ④

※ 교재 138쪽 해설 수정 및 박스 조문 대체

해설 ④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4.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5.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이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로서 분석의뢰물에 대한 증거분석 업무 및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증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출력·복제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은 수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지원요청 및 처리) ①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에게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은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압수·수색·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제10조 각 호의 내용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 ①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제1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등"이라고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증거분석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고 한다)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수색·검증)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1. 도박·음란·기타 불법사이트 운영 사건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 디지털 데이터가 다시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디지털 저장매체에 음란물 또는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어 유포 시 개인의 인격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불법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4. 디지털 저장매체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가 포함된 존재 자체가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1조의 방법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에 관하여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호)을,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각 준용한다.

제12조(확인서 등) ① 수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③ 수사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복제본을 획득할 때에는 제2항을 각 따른다.

④ 제3항 후단 중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피압수자등이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철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수사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사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 원본 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사관은 제11조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한 경우에 압수증명서 및 상세목록의 교부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⑧ 그 외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7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임의제출) ① 피압수자가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관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피압수자의 동의가 있으면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시값 확인, 참여권 고지, 확인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피압수자가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제14조(증거분석 의뢰) ①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물을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직접 운반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관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등 분석의뢰물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증거분석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보관 및 삭제·폐기) ① 분석의뢰물, 제17조제1항의 복제본,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항온·항습·무정전·정전기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람제한을 설정하는 등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증거분석관과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전자정보 확인서에서 제외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